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

2014. 9. 24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.9.11. 이봉수 의원 외 10명
- 나. 회부일자 : 2014.9.12.
- 다. 상정일자 :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(2014.9.24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허정행 의원

가. 제안이유

주민의 안전증진과 지진·화재 및 건축물 공사장 관련 피해 등의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, 지속적인 안전관리 점검 및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 불감증 해소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「서울특별시

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에 따라 마포구민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, 풍수해·지진·화재 및 건축물 공사장 관련 피해 등의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- 2)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하며,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
- 3)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.

3. 검토보고 (김용범 전문위원)

- 지방의회에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 등에 근거하여 구성·운영되는 것으로,
- 동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마포구의회 차원에서 마포구민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, 풍수해·지진·화재 및 건축물 공사장 관련 피해 등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비 능력을 확보함은 물론 안전한 마포를 만들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하고자 제안되었음.
- 최근 세월호 사고 발생 후 안전에 대한 의식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나,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 등 근본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
- 또한, 서울 도심내 불특정지역에서 도로함몰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이미 전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바, 우리구에서도 흥대 인근 롯데씨네마 영화관 천장이 무너져 관객이 대피하는 등 많은

사고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어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대책의 하나로 관내에 있는 호텔, 영화관, 공영 주차장, 시장 등 공공 대형 건축물과 공공 다중집합장소 및 발전소, 빗물펌프장 등 기반 시설물 등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“안전권” 의무를 이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.

- 요컨대 지진, 수해, 화재 및 대형건축물 공사장 관련 피해 등으로 인한 도시의 재난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,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시의 적절한 사안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